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9. January _ Vol. 123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식품안전 주요 NEWS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품 전국 일제 점검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초콜릿류 안전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 · 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마트·편의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부패 · 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원료 사용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존 및 유통기준 미준수	영업정지 7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6일)

CESCO Food
Food Safety Member
세스코식품안전Zone
1588-1119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이물 클레임 예방

식품안전 주요 NEWS

식약처,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477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한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5일)

정책 / 법령 정보

어린이 비타민캔디, 비타민 보충하려다 당류 섭취 많아져

-온라인몰에서는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했으며,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부 제품은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1월 17일)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 2018년 위생상태 불량한 해외제조업소 74곳 수입중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18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 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 · 기구류의 세척 · 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 · 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 · 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7일)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

-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 ·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목표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 · 신고대행업 · 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 강화
2.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 · 폐기 실시
3.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
4.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 · 다이어트 · 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 · 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목록 공개

식약처는 이번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4일)

세스코 해외식품 위생평가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제4호)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점검기준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점검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

- 상향 평준화된 객관적 평가 시각
-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
- 충분한 인적, 물적, 경험적 자원 확보
- 해외식품 위생평가 대상업체 접근 편의성 확보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준 높은 평가기관
- 위생평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생평가원 심사 및 평가 체계 구축
- 위생평가원 윤리의식 강화

⚠ 주요 단속 정보

'19년 1월 ~ 2월 점검(수거검사 포함)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밸런타인데이 대비 전국 일제 점검	초콜릿 제조업체	1.21~1.25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7~2.20
○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점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영유아곡류조제식, 환자용식품 등	2.18~2.22
○ 상반기 탁·약주 제조업체 점검	탁·약주 제조업체	2.18~2.22
○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점검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2.25~2.27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과 정부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와 수출 지원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법령 · 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을 구축하여 12월 2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요 해외 식품관련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원의 공식 포털사이트로서, 현재 중국 및 미국의 식품표시기준을 포함하여 160여개의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국가별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 ▲법령 및 기준규격 검색서비스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 미국 등 국가별 주요 법령 및 기준규격 국문 정보를 원문과 함께 제공하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검색조건을 달리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매월 해외 5개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여 월 1회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원은 동 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주요국 식품규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국가를 확대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이용자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눈높이에 맞춘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식품안전정보원, 12월 28일)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academy.co.kr

HACCP 정기 과정 (1/22, 2/19)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1/22, 2/19)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환급'

HACCP 팀장 과정 (1/23~24, 2/21~22)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환급'

표시 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1/25)

- 표시 연관 법령을 한눈에 소개 (법, 공전, 기타 법령)
- 사례 위주로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원산지,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작성, 제품 표시 분석, 오류사항 찾기 실습도!~

위생용품 위생 교육

위생용품 위생교육-신규/보수 과정(2/28)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

© 2016. CESCO Co.,Ltd All rights reserved.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chapter #3

“ 주요 법령 변화 ”

주요 법령 변화

- ❖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위생법 편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입법예고, '16.4.21)
- ❖ 식품공전 전면 개편 ('16.12.29, '18.1.1시행)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8.12.19, '22.1.1시행)
- ❖ 식품첨가물공전 전면 개편 ('16.4.29, '18.1.1시행)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면 개편 ('16.6.13, '18.1.1시행)
-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장류(14년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9.1.1~, 그 외– '21.1.1~)
  코코아가공품류,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 – '20.1.1~
- ❖ GMO 표시기준 개정 ('17.1.25, '17.2.4시행)
- ❖ GMO 전면 표시 (국회 입법단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18.3.13, '19.3.14시행)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12.11, '20.1.1시행) – 김치류, 절임류/소금
- ❖ HACCP의무적용 확대 : (과자 등) ~ '20.12.1, (식육가공업) : ~ '24. 12.1

“ 주요 법령 변화 ”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 김치류,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 –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절임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363호(18.12.11))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chapter #3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일 : '19.3.13

❖ 주요 내용

-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를 추가
- 식품 등의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
  -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 ·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자율심의
  -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
  -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시기준의 기준 (제4조)		● 표시사항의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 자사 제품을 제조,가공위해 수입되는 제품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식품 및 축산물 – 비행기 안에 제공되는 식사는 메뉴판 형태로 알레르기유발물질말 표시 가능 – 바코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표시 의무자 (제3조)
		● 표시방법 (제4조) : '별표3.식품등의 표시방법'에 따름 – 글씨는 장평 90%이상, 자간 -5%이상으로 표시
영양표시 (제5조)		● 영양표시 (제5조) – 건기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대상 – 명칭, 함량,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6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6조)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chapter #3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광고의 기준 (제7조)		● 광고의 기준 (제7조) : ‘별표6.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사항’에 따름 –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광고하는 경우 제품명,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8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 (제2조) – 명칭.종류.제조방법, 등급.품질.영양, 원재료.성분에 관한 사항 – 영업소 명칭, 상표, 내용량, 사용 정보 – 날짜에 관한 사항 – 유전자변형식품 등 – 이력추적관리 – 안전관리인증 등 인증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 (제3조) : ‘별표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범위’에 따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 의약품/건기식 오인혼동 – 거짓.과장된 표시,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의심 –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하는 표시, 광고 등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9조)		●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제8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0조)	●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 (제4조) ●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제6조)	●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 등 (제9조) –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5조)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 (제15조) –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 미표시 – 일자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하거나 미표시